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공고문 2019-제27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9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목적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된 위탁비용을 지원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사업 내용

가. 법적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지급해야하는 위탁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사업 내용

- (대상기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 기 협약 체결기관 중 협약 종료일이 10월 하순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 (지원내용) 200만원/위탁기관
- (지원 기간) 협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 방법)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비용(200만원) 지급

다.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 기 협약 체결기관 중 협약 종료일이 10월 하순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 (신청접수) '19.9.9.(월) ~ '19.9.30.(월) 17:00까지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협약신청 의료기관은 붙임의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동시에 이메일 제출

*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및 관리기관 이메일, 연락처는 p.15의 붙임 참고

라. 선정방법

○ 관할 지역별 공용윤리위원회는 요양병원 분포에 따라 선착순으로 기관 선정

※ 단, 해당 기관의 위탁협약 가능 범위 및 사업비 예산을 고려해 최종 선정하되, 위탁기관 수는 조정 가능함

마. (협약체결) '19.10.21.까지(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신청 의료기관이 협약함)

바. 위탁비용 신청 및 지급

○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협약을 체결 후, 5일 이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협의회 사무국(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위탁 비용을 신청함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운영계획서, 위탁협약서 등

사.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신청

- 협약신청 의료기관에서는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체결 후 5일 이내 정보처리시스템(<https://intra.lst.go.kr>)에 등록 신청함

※ 필요서류 : 법인공인인증서(보건복지 용도 제한), 공문(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위탁협약서

아.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승인 : ~ '19.10.31.

자. 업무개시 : '19.11.1.

붙임 1.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기관 소개 양식(협약신청 의료기관용)

붙임 3.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협약서

붙임 4. 위탁운영 계획서 작성 양식(공용윤리위원회용)

붙임 5.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및 연락처

붙임 6.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